

글로벌K-컬처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교육과정 및 교과목 운영지침

제정 2023.11.20.
시행 2023.11.30.
개정 2025.03.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규정」 제3조 2항에서 위임한 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란 여러 대학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K-컬처 분야 교육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 산업체·연구기관·학회·민간기관 등이 참여해 국가 수준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대학을 말한다.

② “주관대학”이란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사업운영 및 교육·학사,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대학을 말한다.

③ “참여대학”이란 컨소시엄 대학별 특성화 역량을 공유·지원하는 세부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④ “공동활용대학”이란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 외의 대학으로, 교육자원을 공동활용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대학을 말한다.

⑤ “소속대학”이란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또는 교과목을 개설한 교강사가 소속된 대학을 말한다.

⑥ “초(超)유연학사제도”란 주관 및 참여대학의 유연학기제, 융합전공, 모듈형 교육과정 등 유연한 학사제도의 특징을 반영한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전용의 학사제도를 말한다.

⑦ “집중이수제”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목별 학점당(15시간) 이상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⑧ “자율설계 학점제”란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학습자 주도형 자율적 과제로 설계하고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⑨ “성과기반 학점인정제”란 글로벌K-컬처 관련 프로젝트 성과물·특허·창업 실적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⑩ “원격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서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⑪ “고정시간 수업”이란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간이 특정된 시간으로 편성된 수업으로 수강생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다.

⑫ “자유시간 수업”이란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개설한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간이 특정된 시간으로 편성되어있지 않은 수업으로 수강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수업이다.

제3조(적용범위)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교과목, 교강사, 수강학생은 소속대학의 학

사행정 업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수업

제4조(학사제도) 학습자의 원활한 교육과정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이수제, 자율설계 학점제, 성과기반 학점 인정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원격수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글로벌K-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수업일수) ① 매 정규학기 수업일수는 15주로 한다.

② 학생은 수업의 3분의2 이상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③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과별 수업일수를 단축하여 집중이수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업형태)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수업은 “고정시간 수업”과 “자유시간 수업”으로 운영한다.

제8조(휴보강 시행) ① 법정공휴일 또는 담당 교·강사의 사정에 의한 휴강 등이 있을 때는 해당 수업의 담당 교·강사는 소속대학 사업단에 휴·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소속대학 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 교·강사는 보강을 시행한 후에는 최종성적 입력 이전에 보강 결과를 소속대학의 대학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유고결석자 출석인정)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유고결석 출석인정 절차에 의거 담당 교·강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유별 인정 기간 및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증빙서류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선택)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최종학기 취·창업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②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으로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출석 인정 사유의 효력을 상실한다. 단, 공휴일은 제외한다.

③ 담당 교·강사가 지정한 강의실 수업, 실시간 온라인강의,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한다.

제10조(출결관리) 지각과 조퇴가 각각 3회일 경우(원격수업은 접속시간 기준 지각 3회일 경우)결석 1회로 환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강의 중 무단 퇴실 시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1조(강의계획서 작성원칙)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수업 담당 교강사는 강의계획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직접 업로드한다.

제12조(강의 편성) ①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 제한 인원, 분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원격수업품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분반 시에는 강좌별로 담당교원을 두거나, 초과한 학생수에 따라 적정 인원의 조교 또는 튜터를 배치할 수 있다.

교과목	운영방식	평가방식	제한인원	분반 기준
캐치웨이브	원격수업	PF	무제한	분반을 두지 않음
	원격수업 대면·블렌디드	절대평가	1,200명	300명
로그웨이브 전공	원격수업	절대평가	800명	200명
	대면·블렌디드			
로그웨이브 리빙랩	원격수업	절대평가	80명	40명
	대면·블렌디드			

② 오프라인 교과목의 경우 강의시간을 매주 금요일로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③ 확정된 강의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간표 변경승인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의 사업단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개설되는 교과목 중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폐강 및 분반을 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폐강기준은 10명 미만의 수강생이 수강 신청한 때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컨소시엄 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승인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학점당 이수시간) 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수강신청

제14조(자격)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강신청 자격으로 한다.

- ①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및 공동활용대학의 소속대학에 재학 중인 자
- ② 대학 입학 자격이 있는 일반인

제15조(절차 및 신청학점) ① 학생은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수강신청 기간 내에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이수할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학기별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지정한 정정 및 철회 기간 이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제16조(재수강 신청)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 이하일 경우 재수강을 할 수 있으며,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평가하며 기취득 성적은 삭제된다.

제17조(수강신청 무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수강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수강신청 미자격자의 수강신청
2. 최대 신청학점을 초과한 수강신청

제18조(수강신청 효력) 수강신청을 완료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폐강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정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정정할 수 있다.

제4장 성적

제19조(성적평균 및 평가) ① 학업성적의 평균점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frac{\sum(\text{과목별 평점}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text{수강신청 총학점수}}$$

수강신청 총학점수

- ②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취득한 학기별 교과목 성적은 소속대학 학기별 성적에 합산한다.
- ③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등급과 점수·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점 수	100~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65이상	65미만~ 60이상	60미만
등 급	A+	A	B+	B	C+	C	D+	D	F
평 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 ④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한다. 단, 기초소양 교과목인 「글로벌K-컬처101」는 Pass/Fail로 평가한다.
- ⑤ 유고 결석자 중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는 출석 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 등

기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 소속대학에서 삭제된 학기는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에서 동일하게 삭제한다.

제20조(성적입력) 학업성적 평가점수 및 성적은 매 학기 시험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가 직접 입력한다.

제21조(성적확인 및 정정) ① 모든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반드시 성적을 확인하여야 하며,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성적정정 기간 내에 담당 교·강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담당 교·강사는 이의신청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경우 성적정정 기간 내에 정정할 수 있다.

제22조(성적확정 및 열람) 학기별 성적은 성적이 확정된 후 열람할 수 있다.

제23조(학점인정) ①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을 통해 개설한 교과목 이수 시 다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을 통해 개설한 교과목은 소속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을 통해 개설한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에 대해 소속대학은 졸업학점의 최대 3분의1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교육과정 및 전공이수

제24조(교육과정)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교육과정은 기초소양과정과 전공심화/융합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교육과정의 구성) ① 기초소양과정은 글로벌K-컬처분야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캐치웨이브로 구성한다.

② 전공심화/융합교육과정은 영화·드라마, 웹툰·애니메이션, 음악·공연, 문학·웹소설 전공으로 구성하며, 현장실무과정을 포함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초급교과, 중급교과, 고급교과를 단계화하여 구성한다.

제26조(다전공 이수) ① 학생은 복수전공, 부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로 이수할 수 있다.

② 다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 신청서를 소속대학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모듈 내 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④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모듈 내 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⑤ 마이크로디그리의 이수 기준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대한 지침』에 따른다.

⑥ 두 개 이상의 전공 이수 시 캐치웨이브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⑦ 두 개 이상의 다전공 이수 시 동일 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이수기준) 다전공 및 영역별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복수전공, 부전공

1. 전공 심화형

다전공	영역별 이수 기준	이수학점	
복수전공	캐치웨이브	6+	36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초급	12+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중급	12+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고급	6+	
부전공	캐치웨이브	6+	21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초급	6+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중급·고급	9+	

2. 전공 융합형

다전공	영역별 이수 기준	이수학점	
복수전공	캐치웨이브	6+	36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초급·중급·고급	18+	
	융합선택 교과목만(선택 분야 외)	12+	
부전공	캐치웨이브	6+	21
	선택분야 내 로그웨이브 초급·중급·고급	9+	
	융합선택 교과목만(선택 분야 외)	6+	

② 마이크로디그리

1. 마이크로디그리 융합형

다전공	영역별 이수 기준	이수학점	
마이크로디그리	캐치웨이브	6+	12
	로그웨이브 초급, 중급, 고급 ※분야 및 트랙과 관계없이 이수 가능	6+	

2. 마이크로디그리 트랙형

다전공	영역별 이수 기준	이수학점	
마이크로디그리	캐치웨이브	6+	12
	로그웨이브 초급, 중급, 고급 ※ 선택 분야 트랙 내에서 이수 가능	6+	

3. 마이크로디그리 전공형

다전공	영역별 이수 기준	이수학점	
마이크로디그리	캐치웨이브	6+	12
	로그웨이브 초급, 중급, 고급 ※ 선택 분야 전공 내에서 이수 가능	6+	

제6장 계절수업

제28조(계절수업) ① 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한다.

② 계절수업 신청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한다.

③ 계절수업은 수업 개시 1개월 전에 교과목, 학점, 강의시간, 수강료 및 등록요령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④ 계절수업의 이수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부과기준) ① 계절수업 수강료는 소속대학 사업단 단장이 정한다.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소속대학 학칙에 의해 등록금을 부과한다.

제7장 제증명 발급

제30조(이수증 수여)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전공에 대한 공동 이수 증명서를 수여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속대학의 학사운영 지침 제규정에 따른다.

② 학사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에 대한 운영세칙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총괄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③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괄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효력) 이 규정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료되는 때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지침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11.30.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03.14.부터 개정 시행한다.